



뉴스홈 > 경제

Tweet 0

Like 0

크게

작게

프린트

이메일

취업이민의 종류

이동찬 이민 변호사

입력일자: 2013-05-16 (목)

미국에서 영주권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획득할 수 있다.

이민은 크게 취업이민과 가족이민으로 나누어진다. 직계가족을 제외한 가족이민은 보편적으로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취업이민 보다는 단순하다. 가족이민은 초청자가 사망을 하지 않았고 재정사항만 문제가없었다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에 영주권자 혹은 시민권자 가족이 없으면 미국에서 가족이민은 신청할 수없다. 그런 경우 취업이민을 신청을 신청하게 된다. 취업이민은 취업이민 1순위부터 취업이민 5순위까지 나누어져 있다.

취업이민 1순위는 대단한능력 보유자, 뛰어난 교수와연구원, 다국적 간부를 위한카테고리이다. 대단한 능력을증명하려면 많은 논문, 전문분야에 기여한 증빙자료, 국제적인 상을 받은 증거, 다른 전문가의 실적을 심사한 기록 등이 필요하다. 대단한 능력을증명하는 것은 이민국에서 까다롭게 심사하기 때문에 쉽지는 않다.

반면 뛰어난 교수와 연구원의 자격을 이민국에 증명하는것은 대단한 능력을 증명하는것처럼 어렵지 않다. 그러나 학교 또는 연구소에서 스폰서를 받아야 한다.

다국적 간부는 대단한 능력이 없어도 취업이민이 가능하다. 미국입국 전 3년 동안 1년을 외국에 있는 계열사에서 간부로 취업을 했으면 된다. 취업이민 1순위로 영주권을 신청하면 1년 내에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취업이민 2순위는 고학력자를 위한 카테고리이다. 취업이민 2순위로 영주권을 신청하려면 신청자는 전문분야에 석사학위를 가지고 있거나 학사학위와 전문분야에서 5년 직장경력이 있어야 한다. 취업이민 2순위인 경우 보편적으로노동허가서(Labor Certification)를 먼저노동부로부터 승인 받아야 영주권을 신청할수 있다. 노동허가서를 받는과정에서8-9개월 정도 소요되고 영주권 받기까지 총 1년이넘을 수 있다.

취업이민 2순위는 노동허가서가 없이도 진행되는데National Interest Waiver를 이민국에서 승인받아야 가능하다. National Interest Waiver는 특출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미국에 이익이 되는 사람들에게 주어진다. 요구하는 증빙자료는 취업이민 1순위의 대단한 능력 소유자와 비슷하지만 법적기준은 취업이민 1순위 보다 낮다. 그래서 취업이민 1순위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고객들이 취업이민 1순위와 National Interest Waiver를함께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취업이민 3순위는 취업이민2순위 보다 시간이 많이 소비된다. 2013년 6월 Visa Bulletin에 의하면 비자 Cutoff 날짜는2008년 9월이다. 2013년 6월에 2008년도 9월에 제출된 영주권 신청서를 심사한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취업이민 3순위는 5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생각하면 된다.

먼저 취업이민 3순위는 전문직, 숙련직, 비숙련적으로나누어져 있다. 전문직은 최소학사 학위를 요구하는 직업이다. 그리고 숙련직은 2년의 직업훈련이나 직장경험을 요구하는 직업이고 비숙련직은 2년 미만의 직장경험이나 직업훈련이 요구되는 직업이다.

많이 본 기사

- 중국 부유층 미국 등으로 '이민
- "이제 사회로" 주요 대학들 일제
- 한국 송금도 세금
- 자격미달 학생 입학 수도록
- UC어바인서 아시아계 남성 칼부림
- [집중 취재] 거세지는 명품 짝퉁
- 아케디아 주택침입 가족유고 강도짓
- 중산층 주립대 학비 확 깎아준다
- 가주 고액세금 체납 한인 15명
- 한인남매 '전국 탐'



라디오 서울 뉴스

- 우레옥, 판매세 56만 달러 체납
- 20대 남성 UC서 칼에 찔려
- 국민생활체육 미주 배드민턴, 테니스
- 전기회사 사칭, 사기 행각 주의
- 중앙선 침범 충돌사고 3명 사망
- 라디오서울 주말연예
- 오바마 케어, 가주는 얼마나 드나

캘리포니아 청정꿀



취업이민 4순위는 흔히 종교이민이라고 일컫는다. 종교직종사자는 종교이민을 신청할수 있는데 인정된 교파에 소속되어있고 종교기간에서 종교 활동을 했어야 한다. 영주권을 받으려면 종교이민 청원서를 제출하기 전에 2년 동안Fulltime으로 같은 교파의 종교기간에서 일을 했어야 한다.

취업이민 5순위는 투자이민이다. 투자이민은 미국에 50만달러 또는 100만 달러를 투자해서 영주권을 받는 것이다. 직접 투자자의 개인회사에 투자를 하거나 지역 센터에 투자해서 영주권을 받는데 요즘 투자이민이 많이 늘었다. 미국에가족도 없고 취업이민 스폰서회사 또한 구할 수 없다면 투자이민이 영주권을 받는 지름길이 된다. 학부모가 미국에교육받고 있는 자녀를 위해서투자이민을 하는 경우가 많다.

위에 언급된 것처럼 영주권을 신청하는 방법은 다양하다. 전문가와 상담하여 가장적합한 방법을 선택을 하는것이 좋다. (2 1 3)291-9980

- AD Law Firm Web Design 개발문의
- AD 웹사이트 제작 전문업체
- AD 읽을거리가 풍부한 WeeklyH를 온라인으로
- AD 과거 신문보기도 가능해요 E-Newspaper
- AD 더욱 똑똑해진 한국일보 전자신문으로 뉴스를 한눈에...
- AD E-paper 푸드 매거진으로 저녁 식단 결정하는 주부들이 늘어...

[홈으로](#) |
 [회사안내](#) |
 [게임월드](#) |
 [한인업소](#) |
 [구독신청](#) |
 [배달사고 접수](#) |
 [Place an AD](#) |
 [독자의견](#) |
 [안내광고신청](#) |
 [광고안내](#) |
 [라디오서울 생방송](#)



THE KOREA TIMES |
 [스포츠한국](#) |
 서울경제 |
 [소년한국일보](#) |
 [hankook1.com](#)

미주 한국일보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1997-2011 [Koreatimes.com](#) ALL RIGHTS RESERVED. [CONTACT](#) FOR MORE INFORMATION